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개정 2020년 2월 26일

개정 2020년 9월 5일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이하 Nutrition RP)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이하 Nutrition RP)는 기초 연구 및 응용영양을 포함한 영양학 전반의 학술연구활동 (총론, 논평, 연구수행의 결과 및 보고 등의 포함)을 발표하여 영양학의 기초적인 학술근거, 한국인의 합리적 식생활 실천 도모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학술적인 뒷받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로, 본 규정은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 1 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2 조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 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단, 영양학 분야에서 시급히 알려야 할 사안인 경우는 이차 게재를 허용한다. 이차게재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아래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동의한다.
- ②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게재 논문이 이차 게재인 점과 일차학술지의 게재 내역을 기재한다.
- ③ 이차 게재 시 되도록 축약본으로 게재하고, 저자가 동일해야 한다.
- ④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한다.

6.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포함된다.

제 3조 (저자됨의 기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기준에 따른다.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저자로 하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할 경우에는 기여자료로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그리고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제 4 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계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논문의 작성과 관계없는 조건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비밀엄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를 심사자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야 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논문의 심사 시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으로 인하여 공동저자,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없다.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사사의 글로 표시한다.

제 6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인 부분과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 또는 해석의 결과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 규정의 시행

제 1 조 한국영양학회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이하 각 학회) 회원 및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는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각 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각 학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각 학회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위원 중 조사 대상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대의원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6.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초록, 보고서, 계획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부정행위 (연구윤리규정 제 2 조, 제 3 조 위반)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연관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규정 수정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대로 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친다.

1.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 (이하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소명기회)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조사자의 비밀보호)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위반사항이 국가적으로 공공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5.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조사 및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연구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1 차 조사하여 조사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한다. 조사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사안을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이를 공문형식의 서면 및 e-mail 등으로 알린다.
 - 2) 조사위원회 소집여부가 결정되면 결정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공문형식의 서면과 e-mail 등으로 통지하고 조사위원회 소집 전까지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자료는 서면 및 e-mail 등으로 받는다.

- 3) 피조사자의 소명자료가 도착하면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기간은 2 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 4) 조사 및 심의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공문형식의 서면 및 e-mail로 통보한다.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6) 연구비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 시 최종 판정결과를 10 일 이내에 서면 보고하고, 출판 등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모든 내용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며 최종 판정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 및 전체회원에게 공지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 7) 조사 및 심의 결과물은 전자문서파일과 인쇄물로 5 년 이상 보관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회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각 학회 회장은 이사회를 함께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시행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제재를 심사 숙고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1.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한다.
2.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일정기간 투고를 금지한다.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투고 금지 기간 최소 3 년 이상으로 한다.)
3. 부정행위가 양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제재와 관련된 경우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투고규정내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ese guidelines,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를 적용하고, 관련기관에 보고한다. 그리고, 중복제재 인 경우는 추가조치로 중복 제재한 타학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 철회 및 기타조치를 요구한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활동의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연구원직을 해촉하고 일정기간 학회 주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 금지 기간 최대 5년으로 한다.)
5. 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전체회원에게 위반사항을 알려 같은 사례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도록 한다.

제 7조 (윤리규정의 교육)

학회 회원 및 학회의 학술연구활동에 관련된 자에게는 연구활동 참여 전에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 8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각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 4 장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 9조 학회의 회원 및 학회의 학술연구활동에 관련된 자는 다음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 한국위원회가 공동 제정 . 선포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2007. 4. 20. 제정 선포)을 준수한다.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보편성의 원칙

과학기술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 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전문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적 종사

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의 준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11.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2.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